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70호 2010. 7. 1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호선) 사업시행
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4호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4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2류5호선, 사업명:소로2-5호선도로개설공사(미집행구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7.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7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선)
 - 【명칭】 소로2-5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구간)
3. 사업의 규모 : L = 43m, B = 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엑셀런트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황해득, 손홍기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18 3층
5.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 2010. 03. 21.(사업시행자 지정과 병행 신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5.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토 지 조 서 (전 체)

(소로2-5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 구간)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M2)			공 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석남	111-76	도	1,780	106	1,674		인천직할시서구				
2		111-155	임	315	296	19		엑셀런트산업 개발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18 3층			
소 계				2,095	402	1,693						
합 계	2필지			2,095	402	1,693						

지 장 물 조 서 (총괄표)

공 사 명 : (소로2-5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 구간)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석남동	111-65		석축	석재,콘크리트	17.8m ³	국(건설교통부)						
2	"	111-65		전주		1개소	한국전력공사						
3	"	111-76		옹벽	철근콘크리트	12.3m ³	인천직할시서구						
4	"	111-155		아까시6주,신갈나무5주,오동나무8주,은행나무1주			엑셀런트산업개발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과안동 130-18 3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과 진료비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진료비 비용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편의제공 및 신용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 조례제명 일부개정에 따라 서구 보건소를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로, 서구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를 서구 보건소장·서구 검단보건지소장(이하“보건소장등”이라 한다)로, 보건소장을 보건소장등으로 수정
(제1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진료비 납부방법 개선 :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함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09.(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참조 : 보건행정과장, 우편번호 : 404-190,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015) 또는 Fax(560-50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보건소” 다음에 “및 검단보건지소”를 삽입하고, “징수조례”를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보건지소”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보건지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타법령에 의거”를 “다른 법령에”로 한다.

제8조제2항의 본문 중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보건소장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우리구에”를 “인천광역시 서구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등”을 “진료비 및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등은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 비용은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징수한 비용은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u> 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역보건법</u> 」 제14조 규정에 따라 <u>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보건지소</u> 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조 (생략)	제2조~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u>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u> 은 서구 관내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u>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보건지소장(이하“보건소장등”이라 한다)</u> 은 서구 관내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u>	2. <u>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u>
② <u>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u>보건소장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u>우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u> (생략)	7. <u>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u> (현행과 같음)
8. <u>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u>	8. <u>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u>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07.16~07.30(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10.06.01~06.30.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단독신청 “붙임참조”(9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통장·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5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6월 매도자(최초분양자) 신청 현황

연번	건물명칭	동	호	신청자	비 고
1	원당풍림	209	1603	김진숙	2010. 6월 신청
2	원당신안	105	1402	이호진	2010. 6월 신청
3	당하대우	110	1001	이연화	2010. 6월 신청
4	원당엘지	102	101	한헌수	2010. 6월 신청
5	원당엘지	108	1503	안영술	2010. 6월 신청
6	마전대원2차	204	1801	윤연화	2010. 6월 신청
7	경서태평	101	1203	심송암	2010. 6월 신청
8	원당엘지	107	1602	원경연	2010. 6월 신청
9	블로대림	108	904	차일문	2010. 6월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NO.)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조정신청
사 유

※ 신청인이 환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

조정신청 대상자
및 증빙서류

-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중
- ②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이 가능한 자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접수증

(NO.)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2. 위탁지정신청자의 자격요건
 - ①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②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③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④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② 사무실(30㎡ 이상)
 - ③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안전도검사 필요시설 및 장비
4. 위탁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변경 가능)
5. 위탁받을 자의 임무
 - 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 실시
 - ② 안전도검사업무 수행 중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 발견 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등
6. 위탁지정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① 신청기한 : 2010. 07. 13 ~ 08. 02. 18:00 까지
(기간내 접수분에 한함)
- ② 접수방법 : 공고기간 내 서구청 녹지경관과로 직접제출
- ③ 제출서류
- 서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 ③항 “별지 제5호 서식(위탁지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자격, 시설기준 관련 구비서류 제출
 -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증빙서류 1부.
 - 검사인력·시설·장비 등 확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위탁지정 경력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1부.
 - 기타 업체의 자산규모, 업무수행관련 보험가입실태 등 증빙서류 1부.
7.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위탁업체는 1개 업체로 선정)
8. 공고기간 : 2010. 07. 13 ~ 08. 02.
9.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녹지경관과 광고물 관리팀(☎560-4180).

2010. 7.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4호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토지소유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0. 7. 1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 인천광역시(수입자: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시설물 등 포함)
5. 공고기간 : 2010. 7. 14 ~ 2010. 7. 28
6. 공고장소 : 게시판, 시군구보, 홈페이지
7. 의견서 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8. 대상물건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소유자	주소	비고
1	인천 서구 연희동	432-1	건사의 30건 축산보상	김영후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32-1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
- 신규 구립도서관을 삼입하며 도서관 수수료·수강료·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
- 보궐위원의 임기 단서 조항으로 신설(제10조제5항)
- 도서관운영위원의 해촉 사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제10조)
- 2009.3.25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정(제13조)
- 신규 구립도서관(심곡어린이도서관) 삼입 【별표 1】
- 자료복사수수료·교육수강료·시설사용료 현실화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4)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 제8항,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 ⑨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 제목“(문고 등의 지원)”을“(작은도서관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석남어린이도서관란 다음에 심곡어린이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곡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1-16번지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B5, A4	30원	80원	1매당
	B4, A3	40원	100원	

2. 교육수강료 : 월 4시간 기준 30,000원 범위(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실제 비용)

3.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1일 1회)	금액(원)	비 고
어울림터(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2시간 이내	20,000	①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② 사용가능 시간대: 09:00~18:00(휴관일 제외) ③ 사용시간 1시간 미만 은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4. 사물함 사용료 : 월 3,000원

5. RFID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 1매 1,500원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도서관법</u> 」(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u>공공도서관</u> (이하 “ <u>도서관</u>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도서관법</u> 」 제27조에 따라 <u>공립 공공도서관</u> 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1조의2 <신 설></u>	<u>제1조의2(적용범위)</u> 이 조례는 「 <u>도서관법</u> 」 제2조 4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u>공립공공도서관</u> (이하“ <u>도서관</u>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생략) 1.~6. (생략) 7. <u>기타</u>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u>법</u> 을 준용한다.	제3조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 <u>도서관법</u> 」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④ (생략) ⑤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u><신 설></u>	⑧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⑨ <u><신 설></u>	⑨ <u>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⑩ <u><신 설></u>	⑩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문고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작은도서관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작은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8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검단어린이도서관</td> <td>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td> </tr> <tr> <td>석남어린이도서관</td> <td>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검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	석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	<p>[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8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검단어린이도서관</td> <td>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td> </tr> <tr> <td>석남어린이도서관</td> <td>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td> </tr> <tr> <td>심곡어린이도서관</td> <td>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1-16번지</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검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	석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	심곡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1-16번지																
명 칭	위 치																														
검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																														
석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																														
명 칭	위 치																														
검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																														
석남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																														
심곡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1-16번지																														
<p>[별표2]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p> <p>1. 자료복사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규격</th> <th colspan="2">금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흑백</th> <th>칼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td> <td>B5,A4</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원</td> <td></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매당</td> </tr> <tr> <td>B4,A3</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	금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B5,A4	30원		1매당	B4,A3	40원		<p>[별표2]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p> <p>1. 자료복사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규격</th> <th colspan="2">금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흑백</th> <th>칼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td> <td>B5,A4</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매당</td> </tr> <tr> <td>B4,A3</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	금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B5,A4	30원	80원	1매당	B4,A3	40원	100원
구분			규격	금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B5,A4	30원		1매당																											
	B4,A3	40원																													
구분	규격	금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B5,A4	30원	80원	1매당																											
	B4,A3	40원	100원																												
<p>2. 교육수강료 : 월4시간 기준 10,000원 (단,교재비 및 재료비는 실비)</p> <p>3. 시설사용료 : 무료</p>	<p>2. 교육수강료 : 월4시간 기준 30,000원 범위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실제 비용)</p> <p>3. 시설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사용시간 (1일 1회)</th> <th>금액(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어울림터 (소공연장) 및 다목적실</td> <td>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rowspan="2"> ·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 사용가능 시간대: 09:00~18:00(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td> </tr> <tr> <td>2시간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간당 10,000원씩 가산</td> </tr> </tbody> </table>	구분	사용시간 (1일 1회)	금액(원)	비고	어울림터 (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2시간이내	20,000	·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 사용가능 시간대: 09:00~18:00(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구분	사용시간 (1일 1회)	금액(원)	비고																												
어울림터 (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2시간이내	20,000	·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 사용가능 시간대: 09:00~18:00(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p>4. ~ 5. (생략)</p>	<p>4. ~ 5.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84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고 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폐차)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2조(20-150만원 범칙금)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 또한 동법제81조 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 하게됩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0년 07월 19일 ~ 2010년 08월 11일

나. 대상차량 : 따로붙임(인천70나8964외 40건)

다. 강제(폐차)처리시기 : 2010년 08월 25일 이후

라. 강제(폐차)처리장소 : 관내 폐차장

마.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바.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 032-560-4962)

붙 임 :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내역 .끝.

2010년 0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 번 후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이해관계인)
139	인천70나 8964	스타렉스	소치영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 신리 492 27/2	인천서구청[교통, 환위, 교민, 세무, 환보] 인천서부경찰 서[교통] 인천중구청[교복] 인천남구청[교통] 수원권 선구청[사산] 서대문구청[교지] 서울중구청[교지] 수 원팔달구청[산교] 서울중랑구청[청환] 서울종로구청 [교지] 경기과천시청[도교] 울산울주군청[지경] 근로 복지공단울산지사[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 사[징수]
140	인천부평 라3857	미라쥬 GS125	이재국	인천 남구 주안5동 16-83 13/3 102호	없음
141	09도3952	싼타페	김명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 용1동 848 3/7 일성@ 106동705호	충남천안경찰서[교통] 저당을부4413-2006-007162[장 기훈] 충남천안시청[교통, 환경, 세정, 차등, 환위] 완산 구청[교통] 인천계양구청[교행] 천안서북경찰서[교통]
142	02러7979	누비라	배규형	인천 서구 가정3동 546 25/4 한신그랜드빌리지 7동201호	인천서부경찰서[교통] 인천서구청[세무, 교민, 교행] 인 천지방법원2007카단14785[엘지카드-주]
143	86라4297	레토나	조광연	인천 서구 연희동 731- 5 8/2 연희하이츠빌라 3동101호	저당을부2826-2007-004586[현대캐피탈-주] 경기파주 시청[도시미관] 인천서구청[환보]
144	인천4거 7671	프라이드	김경선	인천 서구 가좌3동 184-15 2/1	저당을부2801-1995-005747[기아자동차-주] 인천서구 청[지교, 교통, 세무, 환위 교민] 인천남구청[교통]
145	28러7870	프린스	김인배	인천 서구 왕길동 579- 27 31/2	인천서구검단출장소[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 지사[징수] 인천서구청[교행]
146	인천30구 9880	누비라	현영순	인천 부평구 삼산동 74-17 영진빌라 사동 202호	인천시청[교지] 인천부평경찰서[교통] 성남중원구청 [건설, 경교] 인천부평구청[교행, 주차, 세무] 인천남구 청[교민]
147	91버4680	와이드봉 고킹캡	TOST NARANKHUU	경기 포천시 가산면 금 현리 1149	인천계양구청[교행, 환위] 경기포천경찰서[교통] 경기 포천시청[세정, 교행]
148	인천2모 8163	엘란트라	황규환	인천 남동구 구월2동 70-22 21/7 성일칸타빌 701동202호	서울강남구청[교지] 부천소사구청[지경] 서울관악구청 [교지] 서울서초구청[교지] 인천남동구청[교통, 세무, 환위, 주차, 환경] 인천연수구청[차등, 교행]
149	서울48로 1436	카렌스	김현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695 1/3	저당을부1121-2002-002591[현대캐피탈-주] 서울노량진 경찰서[교통] 영등포구청[교지, 세무] 서울양천구청[세 이, 환경] 서울금천구청[교지, 교행] 서울종로구청[교 행] 서울양천경찰서[교통] 일산서구청[도시미관] 경기 광주시청[교행] 인천남구청[교민] 영등포경찰서[교통] 경기시흥시청[차관] 단원구청[건교] 상록구청장[건교] 동안구청장[건교]
150	경기37도 9423	프라이드 웨곤	김종표	경기 광명시 광명7동 41-25 1/4 1층호	경기부천시청[민원, 교지] 저당을부4111-2001- 003235[장기오] 부천남부경찰서[교통] 남양주시청[세 무, 교행, 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징급] 인천남동구청[교통] 부천중부경찰서[교통] 인천계양구 청[교행] 경기광명시청[세무, 시민, 환청]
151	88나8988	포터초장 축슈퍼캡	이영민	인천 서구 석남1동 506-7 31/4	인천서부경찰서[교통] 서울중구청[교지] 대전동구청 [환경]
152	70거2099	레조	김정희	서울 강동 암사1동 459-13 4/5	서울강남구청[교지, 교행] 서울송파경찰서[교통] 서울 송파구청[교통, 세이, 민원] 저당을부1125-2001- 001381[원상덕] 서울강서구청[주차] 서울서초구청[교 지, 주차] 서울지방법원2001카단7517[성후경] 서울강 동경찰서[교통] 서울지법동부지원2002카단15834[김신 재] 인천서구청[교통] 서울강동구청[세관, 민원, 교관, 징수] 인천동구청[건교] 서울중구청[교지] 서울중랑구 청[교지] 동대문구청[교지] 부천오정구청[경교]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 번 후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이해관계인)
153	04노2433	무쏘	김영기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399-9 1/5	용인처인구청[세무, 환경]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2008카단1375[대우캐피탈-주] 의정부시청[교지] 경기용인경찰서[교통] 서울노원구청[교지]
154	서울31다3787	레간자	이남수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1-11 28/8	서울관악구청[교지, 세이, 교행, 환경] 영등포구청[교지] 서울중구청[교지] 서울남부경찰서[교통] 서울관악경찰서[교통] 부산연제구청[교통] 서울강남구청[교지] 서울시청[교단] 인천중구청[교행]
155	미상	BMTA 125	미상	미상	없음
156	미상	Prima Rally	미상	미상	없음
157	경기32머4272	레간자	라경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546 21/	서울송파구청[교통] 성남중부경찰서[교통] 경기안산시청[교통] 서울강남구청[교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1카단5267[농협협동조합중앙회] 성남중원구청[건설] 경기성남시청[차등] 성남수정구청[건설, 세무, 환위] 서울중구청[교지] 성남수정경찰서[교통]
158	47모2830	아반떼	이혜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 41/1 순복음@ 201호	영등포구청[세무]
159	인천70나4826	스타렉스	정철수	인천 서구 가정3동 546 21/3 한신그랜드빌리지 33동502호	인천계양경찰서[교통] 인천계양구청[환위, 교행] 인천연수구청[교행] 인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 인천남구청[교통] 인천서구청[세무]
160	인천80나9534	그레이스6밴	이상현	인천 서구 가정1동 528-2 47/1	저당을부2826-2002-002780[엘지카드-주] 인천부평구청[교행, 주차] 인천서구청[교통, 환위, 교민, 환보, 세무] 인천서부경찰서[교통] 인천중구청[교행] 성남분당구청[경교] 서울서초구청[주차]
161	인천82라4437	포터초장축슈퍼캡	최근실	인천 서구 검암동 616-6 30/1 스카이블 202호	인천계양구청[교행] 인천부평구청[교행] 부천소사구청[경교] 서울시청[도교] 인천서구청[세무, 교민, 환보] 경기부천시청[도시미관]
162	73구5377	카니발	양옥임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01-6 7/5 성진베스트빌 2동B01호	저당을부2801-2000-005728[손기균] 인천남구청[교통] 인천연수구청[차등] 인천남동경찰서[교통] 인천남동구청[교통, 환위, 세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징수] 청주상당구청[경제] 인천시청[교관]
163	46더5634	스타렉스	한상길	인천 남구 용현동 463-33 11/3	저당을부2824-2006-003539[쌍용캐피탈-주]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고객지원] 인천남구청[환복, 세무, 환위, 세일, 교민] 인천동구청[교통]
164	인천73가6053	카니발	주-앤에이정보컨설팅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8-25	저당을부2823-1999-200849[현대캐피탈-주] 인천계양경찰서[교통] 서울용산구청[교지] 서울종로구청[교지] 인천부평구청[교행] 서대문구청[교지] 서울서초구청[주차] 서울마포구청[교지] 서울구로구청[교행] 영등포구청[교지, 주차] 인천계양구청[교행, 세무, 환위] 서울중구청[교지] 수원권선구청[사산] 인천서구청[교행, 세무]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가입자] 서울강서구청[주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징수] 서울구로구청[환경] 서울양천구청[교지] 서울성북구청[교관] 서울강남구청[교지] 서울시청[도교] 경기부천시청[도시미관]
165	KMHVF21LP SU252415	엑센트	미상	미상	없음
166	미상	SMS100	미상	미상	없음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 번 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이해관계인)
167	서울42너 7543	쏘나타	이흥식	서울 강남구 삼성2동 38-2 19/4 204호	저당을부1115-2002-002695[현대캐피탈-주] 서울중구 청[교지] 대구남구청[세무] 서울지방법원2003카단 68492[주-신원엠피] 서울강남경찰서[교통] 서울강남 구청[세이, 교행, 교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강남서부지사 [징수] 서울마포구청[교지] 경기일산경찰서[교통] 대 구수성구청[세무] 서울서초구청[주차] 서울용산구청 [교지] 서울시청[교지] 서울광진구청[교지] 용인수지 구청[산교]
168	충남86노 3887	그레이스	장량	인천 부평구 산곡2동 251-2 5/3 우성@ 502동 102호	충남예산구청[환보, 종합민원, 지경, 환경, 재무] 경기시 흥시청[교지] 인천계양구청[교행] 인천남동구청[교통] 충남서산시청[환보] 인천부평구청[교행] 고양덕양구청 [산교]
169	충남86노 3535	그레이스	장량	인천 부평구 산곡2동 251-2 5/3 우성@ 502동 102호	충남예산경찰서[교통] 충남예산구청[민원, 지경, 환보, 종합민원, 환경] 인천부평경찰서[교통] 인천계양구청 [교행] 인천남동구청[교통] 충남서산시청[환보] 인천 남구청[교통]
170	70조1876	타운너	김득수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99-47 34/5 대림빌라 102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징수] 인천남동구청[세 일, 환경, 자동차과] 서울중랑구청[교행] 서울종로구청 [교지] 인천부평구청[주차] 서울종로구청[교행] 서울 강서구청[주차] 서울동작구청[세일]
171	87라3610	와이드붕 고더블캡	권혁중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 곳리 349 20/ 용진2차@ B동203호	인천강화군청[재무, 경교] 인천강화경찰서[교통]
172	05노6884	그랜저	유-상무모 터스	광주 광산구 흑석동 195-3	광주광산경찰서[교통] 광주광산구청[교통, 환위, 세이]
173	25다7839	아벨라	진기석	인천 남동구 만수3동 111-228 3/4 대영빌라 B02호	인천남동구청[교통, 세무, 환경, 자동차과] 안산상록구청 [산교] 인천남동경찰서[교통] 경기부천시청[도시미관]
174	인천34고 1485	세피아	김확수	인천 남구 송의1.3동 109-318 20/3	인천남구청[세무, 교통, 세일] 인천부평구청[교행] 국민 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징수]
175	전북29마 2297	크레도스	박신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 방동 920 40/4 초원그 린타운 105동1202호	전주덕진구청[지경, 도교] 전주완산구청[지경, 도교] 전 북전주시청[차량] 저당을부4512-2002-010505[엘지카드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자징] 전북완주 군청[경교] 전남장성군청[지경] 전북정읍경찰서[교통] 전북고창경찰서[교통] 전북정읍시청[교통, 세정] 경기 평택시청[교행]
176	서울71누 2281	갤로퍼승 합	이미숙	서울 은평구 역촌동 84-32 34/4	서울양천구청[교지] 서울중구청[교지] 영등포구청[세 관, 환관, 교지, 교행] 서울강서구청[교지, 주차] 서울은 평구청[교행, 환경, 교지] 서울마포구청[교지] 서울동작 구청[교지] 서울구로구청[교행]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0카단9772[주-두영코스메틱] 서울서부경찰서[교 통] 영등포구청[교행, 환경] 서울강북구청[교지]
177	인천73나 7395	그레이스	주상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동4가 426-8 26/3	인천지방법원2002카단18807[임채호] 영등포구청[교 지, 주차] 인천계양구청[교행, 세무, 환위] 경기광명시청 [교행] 경기시흥시청[교지] 인천중구청[용유출장소] 인천남구청[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 [징수]
178	95무2216	포터초장 축슈퍼캡 내장탑차	임성기	인천 서구 석남1동 465-3 26/3	저당을부2826-2007-001474[현대캐피탈-주] 인천남구청 [세일, 환위, 교통, 환보] 인천서구청[교행] 인천부평구 청[교행]
179	대구78가 6246	다마스	임순미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 리 224-107 2/3	저당을부2709-2001-000287[대우캐피탈-주] 대구지방 법원2003카단28352[삼성캐피탈-주] 대구달성군청[세 무] 대구시청[주차] 대구달성경찰서[교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 6. 10. 제정에 됨에 따라 현행 조례 및 규칙을 이에 맞추어 일부개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방법 개선

-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시 단서규정 및 각 호를 개정
- 규칙에서 규정했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폐지하고 예규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신설
-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개정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완

- 예규에 맞추어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의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의결사항을 심의·평가사항으로 변경

□ 금고약정에 대한 보완

- 금고지정 통지 후 약정체결을 10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함
- 규칙상 표준약정서를 폐지하고 금고약정서에 포함될 필수사항을 예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금고운영 보고**

- 금고운영 관한 상황 시기, 내용 등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세무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여한 경우”를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를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한 개의 금고”를 “1개의 금고(단일금고)”로 하고,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를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구의원 구 관계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를 “세무사, 구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구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을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일 이내에 구 표준약정서에”를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표준약정서상”을 “금고약정서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최대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부여를 달리 할 수 있다.
 - 가.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의 하한을 배점한도의6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3)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4)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건전성, 3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점)**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추진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고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지정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별표와 같이 하고, 배점기준 및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 항목별 배점부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금고지정) ① -----<u>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u>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u> ----- 2. -----<u>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3. ----- <u>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u><삭제></u> <p>② -----<u>1개의 금고(단일금고)</u>----- ----- <u>다만,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정기준) ① <u>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u> 2. <u>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u>

현행	개정안
<p>〈본문 삭제 및 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구청장은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구의원, 구 관계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② (생략)</p> <p>③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 4.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p> <p>① (생략)</p> <p>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p>	<p>3. <u>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u></p> <p>4. <u>금고업무 관리능력</u></p> <p>5. <u>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u></p> <p>② <u>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u></p> <p>③ <u>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u></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 ----- ----- -----, <u>세무사, 구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구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평가</u>----- ---</p> <p>1. <u>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u>----- -----.</p>

현 행	개 정 안
<p>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8조(금고의 중도해지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또는 표준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 설></p>	<p>제8조(금고의 중도해지등) ① ----- ----- -----<u>금고약정서상</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부 칙</p>	<p>부 칙</p>
<p>제2조(경과규정)</p> <p>①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금고지정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③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되는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0. 12.31까지로 한다.</p>	<p>제2조(경과규정)</p> <p>① <삭 제></p> <p>② <삭 제></p> <p>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p>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항”을 “조례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및 제3조”를 “조례 제3조 및 제3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심사기준	위원별									합계	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